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방자치단체의 소음지도 작성 및 공개 의무화 〉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5787호)

2024. 5.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지방자치단체의 소음지도 작성 및 공개 의무화	3
※ 참고자료	9
1. 소음지도 작성 현황	9

I. 제안경위

2023년 12월 7일 이수진위원이 대표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통기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지역의 소음의 분포 등을 표시한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음지도 작성 근거는 현재 임의조항으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 없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작성기준·방법에 따라 작성되고 있음. 이에 실제 소음지도의 활용을 위해서 포함될 필요가 있는 정보가 표기되지 않고 있어, 그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구 50만(면적이 1천m² 이상인 경우에는 30만) 이상인 대도시인 경우 또는 연간 기차·자동차·전차 등의 교통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소음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또한,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경우 소음피해의 저감이라는 본래의 목

적 달성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로서 주요 소음원, 거주인구
및 공동주택과 학교·의료기관 현황, 소음지도 관할 관청 등의 정보를
포괄하도록 함으로써 소음지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
의2).

Ⅲ. 검토의견

1. 지방자치단체의 소음지도 작성 및 공개 의무화

개정안은 대도시 또는 연간 교통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주요 소음원, 소음 측정지점의 위치정보 등을 포함한 소음지도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작성한 소음지도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2항·제3항 및 제4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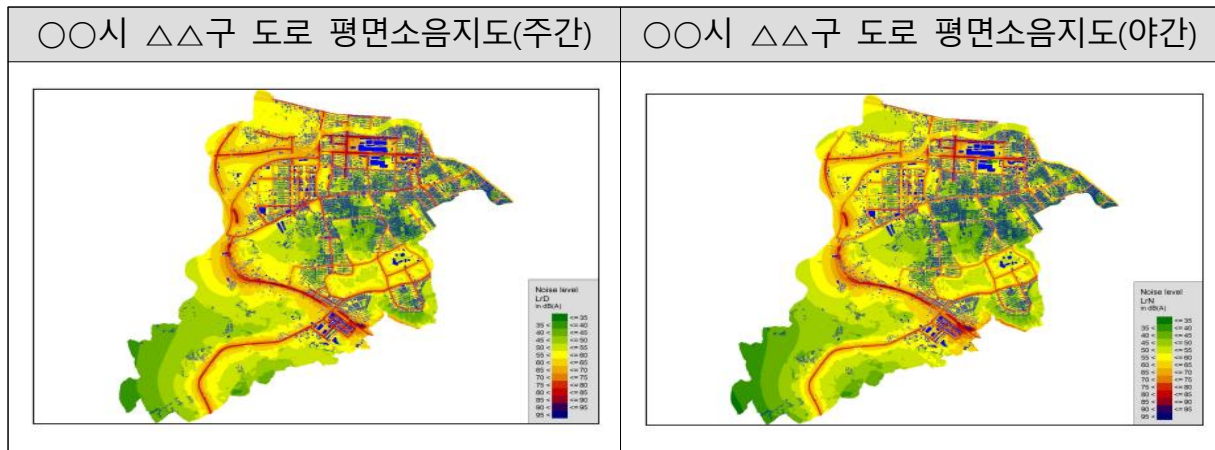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① (생략) <u><신설></u>	제4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소음의 분포 등을 표시한 소음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에 해당하는 지역 2. 연간 교통기관의 교통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 3. 그 밖에 소음지도를 작성할 필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u> ③ <u>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u> 1. <u>소음의 정도 및 주요 소음원</u> 2. <u>소음 측정지점의 위치정보</u> 3. <u>거주인구, 공동주택 및 학교·의료기관 현황</u> 4. <u>소음지도 관할 관청</u> 5. <u>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계획</u> 6. <u>그 밖에 소음지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u>
<u><신 설></u>	④ <u>제2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한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u>
② <u>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u>	⑤ ----- ---제1항 또는 제2항----- -----공개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시·도지사에게 대하여는 소음지도 작성·운영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 ----- ----- ----- -----.

현행법 제4조의2¹⁾에서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일정 지역의 소음 분포 등을 색으로 표시한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소음지도 작성 예시]



자료: 환경부

- 1) 법 제4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교통기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지역의 소음의 분포 등을 표시한 소음지도(騒音地圖)를 작성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시·도지사에게 대하여는 소음지도 작성·운영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임의적으로 소음지도를 작성하고, 그 공개 여부 또한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어 그 실효성이 크지 아니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또는 연간 교통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소음의 정도 및 주요 소음원, 소음 측정지점의 위치정보 등을 명시한 소음지도를 작성하도록 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생활권 내의 소음과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를 증진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4조의2제2항에서는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1항2)에 따른 대도시에 해당하는 지역, ② 연간 교통기관의 교통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 및 ③ 그 밖에 소음지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을 소음지도의 작성 의무 지역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 제4조의2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에 해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 ①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다만,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

1.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당하는 지역은 총 24개 도시로, 도시 전체를 소음지도 작성 의무 대상으로 정하는 경우 소음지도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되고, 과도한 행정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³⁾을 고려하여, 소음관리가 필요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소음지도를 작성·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작성 범위를 재량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경기도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오가는 교통량을 감안하면 대도시가 아닌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개정안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여 소음지도 작성 의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소요되는 행정력 및 예산이 과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둘째, 안 제4조의2제5항에서는 소음지도가 작성되면 그 작성주체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⁴⁾에서는 소음지도의 경우 거주지역 등 지리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공개 시 재산권 피해 또는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개를 의무화하기보다는 그 공개 여부를 각 시·도지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⁵⁾

3)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의견

4) 경기도 의견

5) 현재까지 작성된 소음지도 중 이를 공개한 사례는 없음(환경부).

[개정안에 따른 소음지도 작성 의무 대상]

연번	행정구역	면적(km ²)	인구(명)
1	서울특별시	605.2	9,390,925
2	부산광역시	771.3	3,295,496
3	인천광역시	1,067.00	2,993,492
4	대구광역시	885.2	2,376,044
5	대전광역시	539.7	1,443,106
6	광주광역시	501	1,420,822
7	울산광역시	1,062.80	1,103,752
8	경기 수원시	121.1	1,197,241
9	경기 용인시	591.2	1,075,474
10	경기 고양시	268.1	1,075,089
11	경남 창원시	749.2	1,009,998
12	경기 화성시	700.6	941,489
13	경기 성남시	141.6	918,771
14	경기 부천시	53.5	781,119
15	경기 남양주시	458.1	732,086
16	경기 안산시	156.5	630,651
17	경기 평택시	457.9	590,185
18	경기 안양시	58.5	543,597
19	경기 시흥시	139.9	519,594
20	충남 천안시	636.2	656,583
21	충북 청주시	941	852,579
22	전북 전주시	206	643,431
23	경남 김해시	463.5	533,565
24	경북 포항시*	1,130.80	492,936

*경북 포항시의 경우 1,000km²이상, 인구 30만 이상 대도시
자료: 환경부

문 의 처

02)6788-5536

※ 참고자료

1. 소음지도 작성 현황 (자료: 환경부)

□ '13년부터 '19년까지 12개 지자체*에서 소음지도 작성

*(작성 지자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성남, 화성, 남양주, 여수, 광양

순번	도시명	작성 기간	예산 (국비) *단위: 백만원
1	서울특별시	'15.3~'16.4 '16.12~'17.12 '17.12~'19.6	2,000 (1,000)
2	경기도 남양주시	'13.1~'14.12	400 (200)
3	부산광역시	'13.5~'15.10	1,000 (500)
4	경기도 성남시	'13.5~'16.2	500 (250)
6	대전광역시	'13.5~'15.12	800 (400)
5	인천광역시	'14.12~'15.12	800 (400)
7	대구광역시	'14.2~'17.12	1,000 (500)
8	울산광역시	'14.3~'15.12	800 (400)
9	광주광역시	'15.3~'17.9	800 (400)
10	전라남도 여수시	17.6~19.4	400 (200)
11	전라남도 광양시	17.3~'19.3	400 (200)
12	경기도 화성시	'17.2~'19.1	456 (228)
합 계			9,356 (4,678)